

행정자치부

훈계·시정 요구

제 목 정선(○○)야구장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 미 실시 등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정선군

관 련 자 정선군 ○○○(전 ○○○○○지원단)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는 2015. 8. 4.부터 2016. 7. 3.까지 ○○○○○지원단에서 정선(○○)야구장 조성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.

「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정선군○○○○○지원단은 생활체육 야구동호인 저변확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‘정선(○○)야구장 조성사업’ 추진을 위해 강원도로부터 2014. 10. 21. 도비 2억(자부담 6억)을 교부받았고

교부조건을 보면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,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고 보조금 집행실적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, 정선군에서는 ‘정선(○○)야구장 조성사업’을 추진하면서 당초 야구장 부지로 계획된 ○○읍 ○○리 000-00번지(면적 12,000㎡) 일원이 정규 구장으로 설치 가능하나

도시계획변경 절차 완료와 토목공사비 증액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계획을 재검토 하여 기존의 ○○공설운동장을 활용하기로 하고 전광판 설치, 이동식 펜스 설치, 이동식 마운드 설치 등의 사업(3억원)을 시행하였다.

그러나, 당초 사업내용이 정규규격 야구장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 ○○공설운동장에 야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 내용변경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고 정규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○○공설운동장의 야구장 설치비로 사용하였다.

또한, 도비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○○공설운동장에 야구장 조성이 2015. 12. 24. 완료 되었으나 현재까지 정산을 실시하지 아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정선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「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, 위 공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잔액 반납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